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17.
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의자: 김정희 의원 등 8명(서보영, 박종길, 장호섭, 정순옥, 최홍린, 이선주, 이진환)
- 발의일자: 2023. 11. 3.(금)
- 회부일자: 2023. 11. 3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3. 11. 17.)

## 2. 제정이유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. 위기가구 발굴 신고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라. 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마.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및 포상제의 규정(안 제6조 및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, 제13조

- 비용추계: 비대상

- 입법예고(2023. 11. 3. ~ 2023. 11. 13.)결과: 의견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제정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·지원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제정되었으나,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,
- 2022년 11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도화 등과 더불어 지역기반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및 “전국민 복지위기 알림·신고체계 구축계획” 등을 발표함으로써 민관협력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하고자 함.
- 또한 법 제9조의2제1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, 법 제13조제1항은 누구든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안 제6조제3항에서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,

포상은 추천을 거쳐 달서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례 제10조와 포상시기를 정한 조례 제11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,

- 안 제7조(포상제외)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충돌되고, 공적 등이 우수한 경우에 수여하는 포상은 개별사례에 대한 별도 평가가 아니라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므로 안 제7조(포상제외)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## **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**

## **7. 심사결과: 수정가결**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

안 제7조를 삭제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7조(포상제외)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「<u>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</u>」 제13조제2항의 신고의 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 우</p> <p>2. 제6조제2항 각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제보한 경우</p> <p>3.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「<u>민법</u>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